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5699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2. C

원고, 피항소인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8698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17.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A, C의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원고 A,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0. 원고 A에게 한 재산세 98,053,030원의 부과처분 중 16,566,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9,610,600원의 부과처분 중 3,313,2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에게 한 재산세 100,756,810원의 부과처분 중 19,26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20,151,260원의 부과처분 중 3,853,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D, E에게 한 각 재산세 37,490,430원의 부과처분 중 각 3,465,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각 지방교육세 7,498,080원의 부과처분 중 각 693,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5. 원고 A, C에게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은 원고 D, E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 A,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함으로써 분리 · 확정되었다).

3. 원고 A, C의 부대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5. 원고 A, C에게 한 별지 1목록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2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을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고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5~6행의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를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7쪽 10행의 "있는 점에"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는 점, 설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 2항,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1항이 '유흥종사자'로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둘 것을 유흥주점영업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경우 단순히 '유흥접객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가 고급오락장의 판단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는 영업장소를 전제하고 있는 점에 】

○ 9쪽 8~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처분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부과처분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부과처분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통상의 경정청구로 본 나머지 그것이 통상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판결의 확정'이라는 사정이 그 자체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종전 부과처분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을 추가·변경한 것이고, 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 10쪽 4~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 10쪽 10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판결은"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판결은 해당 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정하여 그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인 조세행정소송의 판결로서,"로 고친다.

○ 11쪽 7행의 "뿐이다"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특히,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2015. 9.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된 2015. 7. 1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위 2015. 9.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일이 동일한데, 원고들은 2015. 7. 1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남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을 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8. 27.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5. 9.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당시에는 유흥접객원이 남성이라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 11쪽 10행의 "더구나"부터 같은 쪽 12행의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더구나 관련 판결은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2015. 9.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나머지 처분'이라 한다)과는 과세표준일 및 과세기간을 달리 하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별지 1 목록 기재 나머지 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그렇다면 △ 원고 D,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 △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 A, C의 각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별지 1

목 록

처분대상자	처분일	세목	처분세액 (원)	경정청구금액 (원)
A	2012. 9. 10.	재산세	68,104,620	58,106,160
		지방교육세	13,620,920	11,621,230
	2013. 7. 15.	재산세	10,793,220	9,918,350
		지역자원시설세	814,590	30,470
		지방교육세	2,158,640	1,983,670
	2013. 9. 10.	재산세	73,595,300	62,717,760
		지방교육세	14,719,060	12,543,320
	2014. 7. 15.	재산세	11,460,820	10,535,560
		지역자원시설세	1,190,370	357,970
		지방교육세	2,292,160	2,107,110
	2014. 9. 10.	재산세	78,849,790	65,715,300
		지방교육세	15,769,950	13,143,060
	2015. 9. 10.	재산세	84,141,120	70,050,210
		지방교육세	16,828,220	14,010,040
	2016. 7. 15.	재산세	10,912,390	10,030,960
		지역자원시설세	1,131,980	341,780
		지방교육세	2,182,470	2,006,190
	2016. 9. 10.	재산세	90,812,380	75,538,010
		지방교육세	18,162,470	15,107,600
C	2012. 9. 10.	재산세	68,104,620	58,106,160
		지방교육세	13,620,920	11,621,230
	2013. 7. 15.	재산세	10,793,220	9,918,350
		지역자원시설세	814,590	30,470
		지방교육세	2,158,640	1,983,670
	2013. 9. 10.	재산세	75,593,440	62,717,760
		지방교육세	15,118,680	12,543,550
	2014. 7. 15.	재산세	11,460,820	10,535,560
		지역자원시설세	1,190,370	357,970
		지방교육세	2,292,160	2,107,110
	2014. 9. 10.	재산세	82,084,630	65,715,300
		지방교육세	16,416,920	13,143,060
	2015. 9. 10.	재산세	86,360,660	70,050,200
		지방교육세	17,272,130	14,010,0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2016. 7. 15.	재산세	10,912,390	10,030,960
		지역자원시설세	1,131,980	341,780
		지방교육세	2,182,470	2,006,190
	2016. 9. 10.	재산세	93,248,170	75,538,010
		지방교육세	18,649,630	15,107,600

끝.